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. 7. 23 선고 2018가단595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1. 2. 9 선고 2019나60766 판결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. 7. 23 선고 2018가단5955 판결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9. 6. 11

판 결선고 2019. 7. 2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가.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나. 사천시 C 대 236㎡을 인도하며,다. 2018. 9. 1.부터 위 나.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가 2019. 8. 31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부동산임의 경매절차에서 사천시 C 대236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, 피고는 위 토지 위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,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아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바, 위 토지의 임대료가 500,000원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18. 9. 1.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약 30,000,000원 상당을 들여 수리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, 이는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전선주

별지